

‘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’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 제3항에 의거 귀하의 입주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
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※ 입주대상자(당첨자/예비당첨자)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한 내에 청약신청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시어 최종 입주대상자(당첨자/예비당첨자)로 선정되어야 하며,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출하신 자격확인 서류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의 무주택기간, 주택소유 여부, 세대원의 당첨사실 등의 전산 검색결과를 토대로 입주대상자(당첨자/예비당첨자)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- ※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및 부적격 의심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, 부적격 의심자로 통보한 날부터 7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소명사실이 부적합 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, 해당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 되오니, 이점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부적격자로 최종 분류되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전산에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은 1년, 수도권 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(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) 동안 다른 분양 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,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(당첨 및 계약취소, 당첨일로부터 당첨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, 아래기간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당첨 유형별 관련 서류 및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제출방법	건본주택 방문제출
제출기간	정당 당첨자 : 2021년 04월 19일(월) ~ 04월 22일(목) (10:00 ~ 17:00) 4일간 예비 당첨자 : 2021년 04월 23일(금) ~ 04월 25일(일) (10:00 ~ 17:00) 3일간
제출장소	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건본주택 : 울산시 남구 삼산로 248 / (현대백화점 사거리) ※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	052-282-6000(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)
당첨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제출	당첨유형별 서류제출 안내 참조

※ 아래의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- 부적격 소명이 해당 소명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- 적격검수를 수행하였으나 정당계약 종료시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-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도 정당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
■ 방문 시 유의사항

- ※ 건본주택 방문 시 검수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 자격과 부적격에 대한 소명은 서류 제출 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, 유선상의 답변은 부정확할 수 있으니, 필히 검수 기간 내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신청 자격 및 소명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 후 미계약시에도 반환되지 않고 즉시 파기됩니다.

[코로나19 관련 안내]

- ※ 건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※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.5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※ 방문자 기록 작성 및 체온 측정, 손소독제 사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신부, 노약자, 영유아의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격확인 제출서류 안내(일반공급 당첨자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	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	
공통 서류	○		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, 인감도장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만 인정되며,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)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(또는외 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)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• 주민등록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주민등록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5)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•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 "상세" 발급 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		
	○		신분증			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	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	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		
	○		출입국 사실증명원				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			
	○		혼인관계증명서				
	○		복무확인서				
공통 서류	○		출입국 사실증명원	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주민등록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5)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	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		
일반 공급 가점제 추가 서류	① 부양가족 인정(경우1.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한 경우)				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※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•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경 우 "상세"로 발급 •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. •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• 제출기간 : '주민등록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5)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	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		
	○		출입국 사실증명원				
	② 부양가족 인정(경우2.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)				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	피부양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 등록번호 전부공개 '상세' 발급 (※과거 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)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) -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공개 '상세'로 발급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발급 시 '상세'발급 된 제출서류에 한해 인정) •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. •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경우 상기 해외 체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• 제출기간 : '주민등록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3.25)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		
	○		혼인관계 증명서				
	○		출입국 사실증명원				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		
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사항	○		위임장		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, 주택전시관 비치
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			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)	○		건물등기부 등본/ 건축물 대장	해당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물 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•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•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-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•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		
	○		무허가건축물확인서				
	○		소형·저가주택임 을 증명하는 서류				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		
	○		사업주체가 요구 하여 인정하는 서 류				
○		사업주체가 요구 하여 인정하는 서 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	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모든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 - 세대 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 ※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 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 ※ 본 안내문은 편집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